

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신고인	기관·단체명	지정번호	
	주소 (전화번호:)		
	대표자 성명		
변경내용 (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)	변경항목	현행	변경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 및 「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원본 2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		
처 리 절 차				
신고서 작성 신고인	→ 접수·검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	→ 심 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	→ 변경 여부 판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	→ 지정서 재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